

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

WEEKLY NEWSLETTER



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



수입통관

이슈바로가기

유럽연합, 신식품 허가 신청 행정 지침 발표

- 2024년 10월 3일, 유럽식품안전청(ESFA)는 신식품(노벨푸드, Novel food) 허가 신청을 위한 행정 지침을 발표함. 이 지침은 신식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과학적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, **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됨**
- 주요 내용(일부 발췌, 자세한 내용은 심층기사 및 원문 참조)
 - 주요 변경 사항
 - 신식품을 설명하고 식별하는 방법과 생산 과정, 구성, 사양 및 제안된 용도에 대한 세부 정보를 설명하고 있음
 - 신청자는 식품을 처리하는 방식, 독성, 영양 및 잠재적 알레르겐을 포함하여 식품의 **예상 소비량, 사용 이력 및 안전성 데이터**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
 - 보충 행정 문서를 통해 신청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실질적인 단계를 설명함
 - 신식품 허가 신청 프로세스
 - 신청서는 전자제출시스템인 **E-Submission Food Chain Platform**을 통해 제출해야 함
 - EFSA는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며, **완료하기 위한 기한을 9개월로 규정**

(*)시행일 : 2025년 2월 1일

출처: EFSA, Administrative guidance for the preparation of novel food applications in the context of Article 10 of Regulation (EU) 2015/2283, 2024.10.03

유럽연합, 제 3국 수입 유기농 제품에 EU 유기농 로고 사용 제한

- 2024년 10월 4일, 유럽 사법재판소는 제3국에서 수입된 유기농 제품이 유럽연합(EU) 법률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한 EU유기농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함
- 주요 내용(일부 발췌, 자세한 내용은 심층기사 참조)
 - 독일 당국은, **비식물성 비타민과 글루코네이트 철분이 함유된 음료 제품에 유기농 로고를 삭제하도록 독일 음료 제조업체에 명령함**
 - EU 규정에서는 '유기농'이라는 용어가 붙은 가공식품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첨가할 수 없음. 이에 독일 연방 법원은 EU의 법안에 따라 유기농 생산 로고를 삭제하도록 명령함
 - 미국은 생산 및 통제 규칙이 유럽 연합과 동등한 제 3국으로 인정받고 있어, 미국산 제품은 EU에서도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될 수 있음
 - 독일 음료 제조 업체는 미국에서는 유기농 대상 제품이므로 불평등한 대우라고 주장함
 - 유럽 사법재판소는 음료 제조 업체의 불평등한 대우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'제3국에서 수입한 제품이 EU와 생산 및 통제 규칙이 동등한 것으로 인정받더라도, **그 제품이 EU 법에서 정한 생산 규칙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EU 유기농 생산 로고를 사용할 수 없으며, 유기농 생산을 지칭하는 용어도 사용할 수 없다**'고 판결함



TBT

이슈바로가기

출처: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, PRESS RELEASE No 160/24, 2024.10.04



TBT

이슈바로가기

캐나다, 특정 식이 목적을 위한 식품의 예외적 수입 허용 장관 명령 제안

- 2024년 10월 1일, 캐나다 보건부는 특정 식이 목적을 위한 식품(FSDP)의 예외적 수입을 위한 장관 명령을 제안함
- 주요 내용(일부 발췌, 자세한 내용은 심층기사 참조)
 - 배경 : 캐나다는 시장 규모가 작고 제한된 수의 공급업체에 의존하기 때문에 몇 년째 FSDP가 부족한 상황임. 이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것과 유사한 고품질 제조 표준을 준수하는 특정 제품을 다른 국가에서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함
 - 대상 식품 : 유아용 조제분유(모유 대체품), 모유 강화제, 조제 액상 식단
 - 예외 내용
 - 라벨링 면제 : 식품 라벨에 특정 유형의 정보는 필수 표시 대상이지만, 표시 방식은 면제됨
 - 성분 면제 : 성분 기준(제 24조, 25조)면제, 비타민과 미네랄, 아미노산 첨가 관련 조항 면제 등
 - 시판 전 검토 면제 : 시판 전 승인 요구 조항 면제(제 25조)
 - 제안 조건 : FSDP는 의도한 식이 목적에 안전하고 영양학적으로 적절해야 하며, 특정 핵심 정보는 영어 또는 프랑스어 중 하나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

(*) 유효일: 2025년 12월 31일 까지 유효

출처 : Government of Canada, Notice of Intent to make a ministerial class exemption order for the exceptional importation ..., 2024.10.01

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

WEEKLY NEWSLETTER



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



수입통관

이슈바로가기

한국 식약처,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 개정 고시

- 2024년 10월 7일, 식품의약품안전처는 「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(민원인 안내서)」을 개정하여 고시함. 개정된 질의응답집은 과학적/기술적 사실 및 유효 법규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Q&A의 세부 항목이 추가됨
- 주요 내용(일부 발췌, 자세한 내용은 심층기사 및 원문 참조)

구분	내용
수출식품 위생증명 종류	· 위생증명서, 자유판매증명서, 분석증명서 등 그 밖에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증명하는 서류
서류 발급 언어	· 영어로만 발급됨 · 수출국이 자국의 언어로 된 위생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면 수출자가 식약처에서 발급받은 영문 위생증명서 등을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 번역 후 공증 받아서 제출 가능
발급 신청 방법	· 직접 방문, 우편, 온라인(식약처 누리집 또는 식품안전나라)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

출처: 식품의약품안전처,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(민원인 안내서), 2024.10

미국 캘리포니아, 식품 날짜 라벨 표준화 법안 서명

- 2024년 9월 28일,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(Gavin Newsom)은 식품 날짜 라벨을 표준화 하는 법안 AB660에 서명함
 - 주요 업데이트 내용(일부 발췌, 자세한 내용은 원문 참조)
- 식품 품질 날짜는 "최고로 신선한 날짜(BEST if Used by)" 또는 "사용 또는 냉동 보관 시 최적의 날짜(BEST if Used or Frozen by)" 로, 안전 날짜는 "사용 기한(USE by)" 또는 "사용 또는 냉동 기한(USE by or Freeze by)" 라벨 사용 의무화
 - "판매 기한(sell by)" 문구 사용 금지
 - 단, 유아용 조제식, 계란, 맥주 및 기타 맥아 음료는 대상에서 제외

(* 시행일 : 2026년 7월 1일



TBT

출처 : The Sacramento Bee, Signs bill standardizing food package labels, 2024.10.10

호주, 수입 식품에 대한 새로운 식품 안전 요구사항 제안



수입통관

- 호주 농업, 수산 및 산림부는 2024년 10월 2일 수입 식품 통제 명령 2019의 개정안을 발표하며, 대추, 멜론, 팡이버섯, 복어 및 카바와 같은 수입 식품에 대한 새로운 식품 안전 요구사항을 제안함. 2024.12.06까지 의견 수렴함
 - 주요 변경안(일부 발췌, 자세한 내용은 원문 참조)
- 대추: 생식 가능한 대추는 위험 식품으로 분류되며, 수입 시 식품 안전 관리 인증서(FSMC) 필요
 - 팡이버섯: 신선한 팡이버섯도 위험 식품으로 분류되며, 라벨에 적절한 저장 및 조리 지침이 포함되어야 하며, 리스테리아균 검사 필요
 - 멜론: 전체 멜론 및 절단된 멜론(신선 또는 냉동)은 위험 식품으로 분류되며, FSMC 인증과 병원균 검사(Listeria 및 Salmonella) 필요
 - 복어: 복어는 위험 식품으로 분류되며, 외국 정부의 인증서 필요
- 시행 예정일 :
대추, 멜론: 2026년 6월 1일 | 팡이버섯, 카바: 2025년 6월 1일 | 복어: 2027년 6월 1일

출처 : Australian Government, New food safety requirements for imported food, 2024년 10월 2일

인도, 식품안전 및 표준(수입)개정 규정 초안 발표

- 2024년 10월 3일, 인도 식품안전 및 표준청(FSSAI)은 2017년 제정된 식품안전 및 표준(수입) 규정의 개정 초안을 발표함.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0일 이내 제출 가능함
 - 주요 개정 내용(일부 발췌, 자세한 내용은 원문 참조)
- 분석 방법 매뉴얼
 - FSSAI가 수시로 수정하거나 채택한 분석 방법 매뉴얼을 사용하여 식품 샘플을 분석해야 함
 - 매뉴얼에 분석 방법이 없는 경우, AOAC, ISO, IUPAC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관의 검증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
 - 실험실 분석 보고서 : 지정된 실험실 또는 참조 실험실은 샘플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식품 분석가 또는 디렉터가 서명한 실험실 분석 보고서를 FORM-2형식으로 제출해야 함



SPS

출처 : FSSAI,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, 2024.10.3